

대우교수 임용 규정

제정 2003. 6. 27.
제1차 개정 2006. 1. 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대우교수의 자격, 임용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1.4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대우교수라 함은 외국국적을 가진 전임교원이외의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대우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본교에서 담당할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적의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사람
2. 외국인으로서 해당언어권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
3.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받은 사람
4. 대학교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제4조(임용절차) ① 대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과(부)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연구업적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하여 해당 학과(부)의 심사를 거쳐 최종 1인 후보자를 학과(부)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③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람은 재 추천할 수 없다.

제5조(임용기간) ①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재직기간은 연속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때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만료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구비서류) 제4조 제1항에 의거 대우교수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
2. 소속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추천서
3. 교육·학문상의 업적목록
4. 학위 및 경력증명서

제7조(처우) ① 대우교수의 보수는 개별계약 등의 조건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대우교수에게는 본교의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와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대우교수·겸임교수 임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대우교수·겸임교수임용규정에 의거 임명된 교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으로 본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, 2006.1.4)

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